

2018년 1인견적 수의계약 특정감사 결과공개

I

감사개요

- 기 간 : 2018. 05. 28.(월) ~ 06. 01.(금)(5일)
- 감사범위 : 2016. ~ 2018. 현재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실장 외 4명
- 감사중점내용
 -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적정성
 -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대상
 - 수의계약 준공검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성

II

종합감사 결과 처분내용

□ 총 지적건수 : 8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감사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시정	주의	건	금액(원)
수의계약 특정감사	8	1	7	-	-

- 신분상 조치 : 훈계 1명

처분지시서(1)

【제 목】 실시설계 용역 검사업무 소홀

【현 황】

- 용역명 : ◇◇◇◇ ◇◇ ◇◇◇◇◇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기간 : 2017. 05. 15. ~ 2017. 08. 11.
- 용역내용
 - 변경 : 폐콘크리트 205ton, 폐아스콘 1,240ton
 - 당초 : 폐콘크리트 205ton, 폐아스콘 466ton
- 사업비 : 당초 계약 대비 105% 증액
 - 변경 : 35,280천원, 당초 : 18,050천원
- 도급자 : ♡♡♡♡주식회사 대표 Y
- 계약방법
 - 준공금액 대비 :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당초 :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 계약금액 조정 사유 : 도로 노면절삭 폐기물 물량 누락분 반영(설계오류)

【지적내용】

- 증평군 ♡♡♡♡과에서는 ◇◇◇◇ ◇◇ ◇◇◇◇◇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17. 01. 24. ♡♡♡♡♡♡♡♡ ♡♡♡♡♡♡♡ 지부장 H와 도급계약하고, 2017. 02. 01. 착수하여 2017. 04. 03.일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7조(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

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예규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특히 계약담당자는 용역 완료에 따른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 그러나 ♥♥♥♥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인수·목적물로 추진한 ◇◇◇◇ ◇◇◇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보면 페아스콘 467ton의 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18,980천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이는 계약금액 대비 105%가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용역 도급사인 ☁☁☁☁☁☁☁ ☁☁☁☁☁☁☁지부에서 설계도면에 포함된 과업 내용을 목적 물량내역서에 착오·누락하여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지 못한 설계오류에 해당하며
- 이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검사 시 부당함을 발견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이 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초금액 산정 및 계약방법 결정에 부적정 사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과

- 내 용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실시설계 사전검사 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훈 계(1명)

처분지시서(2)

【제 목】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 현 황

(단위 : 원)

부서명	계약일자	사업명 (통계목)	계약금액	도급자	지역개발공채 징구액	적정 금액	비고
◆◆과	'18.2.7	♠♠♠♠♠ 의복 구입 (101-04)	7,150,650 (공급가 6,500,590)	B	160,000 (2.5%)	90,000 (1.5%)	과다 70,000
◆◆과	'18.2.7	ㄹㄹㄹㄹㄹㄹㄹㄹ 의복 구입(101-04)	10,964,330 (공급가 9,967,572)	B	240,000 (2.5%)	140,000 (1.5%)	과다 100,000
♠♠♠	'18.4.16.	☑☑☑ ☑☑☑☑☑☑☑☑ 공사(401-01)	14,689,940 (공급가 13,354,491)	C	300,000 (2.25%)	330,000 (2.5%)	과소 30,000

【지적내용】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분 야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100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

- 위와 같이 대금 청구액(공급가액)의 2.5% 또는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 같은 조례 제8조의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에 대한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지역개발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면제대상을 준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복을 구입하며 17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과다 징구하였으며, ♣♣♣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2.5%의 채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30,000원의 채권을 과소 징구하여 위 계약건에 대하여 대금집행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과, ♣♣♣

- 내 용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는 관련지침 업무연찬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지출업무시 철저히 검토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처분지시서(3)

【제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원가계산 업무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기 간	계약상대자	도급 금액	품명	순공사원가 반영	비 고 (적용근거)
▽▽2리 ▽▽▽▽▽공사	17.4.5~17.4.29	(유)k	5,300	수로관 하차	재료비, 노무비, 경비	표준품셈
§§3리 §§§§§공사	18.4.3~18.4.20	o(주)	7,000	수로관 하차	재료비, 노무비, 경비	표준품셈
○○리 ○○○○ ○○○○ 공사	17.10.18~17.10.27	T(주)	5,417	포장공	견적서	1인 견적가격

【지적내용】

- ◇◇◇에서는 주민편의 및 소규모주민숙원을 위해 ▽▽2리 ▽▽▽▽▽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경비의 세비목 중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추정 가격 산정 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2리 ▽▽▽▽▽공사 외 1건의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수로관하차는 원재료의 하역비로서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부

적정하게 공사원가를 계산한 사실이 있으며,

- ○○○리 ○○○○○ ○○○○○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인 T(주)이 제출한 1인 견적서의 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계약을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추진시 경비내역 검토 철저 및 1인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비교검토로 원가계산 업무를 정확히 하여 주시고,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인계인수 철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처분지시서(4)

【제 목】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위반

【현 황】

○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 계약업무 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현황 : 3건

[표1] 불필요 서류 첨부현황

부서명	계약일자	계약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여부	첨부 서류명
♣♣♣	2018.3.14	○○1리 ○○○○ 정비공사	여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2018.3.14	◆◆3리 ◆◆◆ 정비 및 포장공사	여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2018.3.14	■1리 ■■■■공사	여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위법부당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7.7.26.)」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개인 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인 납세증명, 각종 등록필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8. 3. 14일 ●●1리 ●●● 정비공사의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수령 및 지불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처리 하여야 할 사항(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국세·지방세 증명서를 제출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

- 내 용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대해 전 직원 업무연찬 하시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5)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미실시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요청 현황

해당부서	자료 회신기관	요구내역		회신여부
		자료 제출	사실조회	
● ● 과	●●●●과	부	부	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p><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제7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에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과 자체종합 감사 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현지조치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계 행정기관(○○○○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사실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시 정

- 기관·부서명 : ○ ○ 과

- 내 용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대해 업무연찬 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이행하시어 관계기관 공문시행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6)

【제 목】 ♠♠ ♠♠♠♠ ♠♠♠♠ 수의계약 운영 소홀

【현 황】

- 사업명 : ●● ●●●● ●●공사
- 사업기간 : 2017. 04. 24. ~ 2017. 05. 18.
- 사업내용 : ●● ●●●● ●●공사 1식
- 도 급 액 : 금20,654천원
- 도 급 자 : ■■■■■주식회사 대표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지적내용】

- 중평군 ▽▽▽에서는 ▽▽ ▽▽▽▽ ▽▽공사를 2017. 04. 18. ■■■■■주식회사 대표 E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하고, 2017. 04. 24. 착수하여 2017. 05. 18.일 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강화로 지방자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²⁾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 ▽▽▽에서 추진한 ▽▽ ▽▽▽▽ ▽▽공사를 ▮▮▮▮ 주식회사 대표 E와 1인 견적 수익계약으로 도급계약하면서 계약 전 수익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익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³⁾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수익계약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도안면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2) 별표 1 참조

3) 별표 2 참조

처분지시서(7)

【제 목】 ◇◇◇◇◇◇ ◇◇(◇◇◇) 및 ◇◇◇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현 황】

- 사 업 명 : ◇◇◇◇◇◇ ◇◇(◇◇◇) 및 ◇◇◇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17. 09. 25. ~ 2017. 11. 13.
- 사업내용 : ◇◇(진입로) 및 ◇◇◇ 설치 1식
- 사 업 비 : 금41,866천원(도금액 28,698천원, 관급자재 13,168천원)
- 도 급 자 : △△△△주식회사 대표 R
- 공 정 율 : 100%

【지적내용】

- 증평군 § § § § § § §에서는 § § § § § § § §(진입로) 및 § § § 설치 공사를 2017. 09. 21. △△△△주식회사 대표 R과 도급계약하고, 2017. 09. 25. 착수하여 2017. 11. 13.일 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용어 정의 라호에 따라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 · 수량 · 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 15조 제1항⁴⁾ · 제30조 제2항에 ⁵⁾따른 입찰공고 ·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2항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같은 예규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사항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 § § § § § § §에서 추진한 ◇◇◇◇◇◇ ◇◇(진입로) 및 ◇◇◇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도급사인 △△△△주식회사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⁶⁾ 시 제출한 견적서 내용 중 사토물량(238.6㎡) 누락분 추가반영 및 단가산출 변경(콘크리트포장(인력시공), 단위 아르(a)→㎡ 단가금액 591,913원→11,955원)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나,
- 위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공사로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내역의 변동(당초 누락 물량 반영) 및 단가변경의 사유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포함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6)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리적정보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 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발췌)

처분지시서(8)

【제 목】 2016년 ★★★ ★★을 위한 ★★★★★★ ★★★★★ 용역계약
정산업무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용역 개요
 - 용역명 : 2016 ★★★ ★★★★★★ 심화교육
 - 기간 : 2016. 04. 22. ~ 2016. 05. 23
 - 과업내용 : ★★★ ★★★★★★ 심화교육 1식
 - 용역비 : 금8,000천원
 - 용역사 : 주식회사 ■■■■■■■■■■ 대표 B
 - 공정율 : 100%
- 완성대가 지급 및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완성일	대가금액	정산일	정산금액	정산사유	비고
2016.05.23	8,000	2016.05.23	7,977	상해보험료 정산	

【지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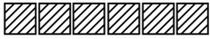
- 증평균 에서는 2016 ★★★ ★★★★★★ 심화교육 용역을 2016. 04. 19. 주식회사 ■■■■■■■■■■ 대표 B과 도급계약하고, 2016. 04. 22. 착수하여 2016. 05. 23.일 준공하였다.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따라 설계변경 요건 이외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이와 관련하여 증평군 [X]에서 추진한 2016 [X]실천 심화교육 용역의 완료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X]은 계약의 전부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사업담당 부서인 [X]에서는 이행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원가계산 내역의 일부 공정인 상해보험료의 미사용에 따른 정산 실시 후 완료대가를 지급하였으나
- 위 용역은 1인견적 수의계약(총액계약)⁷⁾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산서류, 지급대장 및 현장확인 복명서 등으로 인한 실비 산정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정산은 제경비에 따른 사후정산임⁸⁾에도 위법·부당하게 상해보험료에 대한 정산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음

7) 시공자가 발주자의 계획이나 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업무나 공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총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실제 공사비가 합의된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발주자가 추가지급을 하지 않으며, 공사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공자의 이익이 된다.(조달청 자료 참고)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의 대상은 제경비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 행정상 처분 : **주의**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